

6) 시·도교육청 및 학교현장실습실습 대상학교와의 협력

- ① 시·도교육청은 법령(「교원자격검정령」 제20조 제6항)에 따라 의무적으로 학교현장실습 협력부서를 지정·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, 교원양성기관은 학교현장실습 대상학교의 선정이 필요한 경우 시·도교육청과 상호 협의해야 한다.
- ② 교원양성기관은 학교현장실습 시작 14일전 까지 실습 일정, 내용, 인원 등이 포함된 교육 실습계획을 학교현장실습 지원(협력)학교와 협의를 완료해야 하며, 학교현장실습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.

바. 기타 합격 기준 요건의 유의점

1)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※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

- ① 적격 판정 기준: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결과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.
 - ㉠ 2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(수업연한 기준)을 이수한 사람: 적격 판정 1회 이상
 - ㉡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(수업연한 기준)을 이수한 사람: 적격 판정 2회 이상
- ②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관련 규정에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내용을 포함하거나 실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, 관련 규정 혹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- ※ 검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과정에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(온라인으로 운영 시, 관리자 감독 하에 컴퓨터 실습실 등을 활용하여 본인 응시 확인)
 - ㉠ 검사 영역에 따른 문항*, Cut-off 기준 등
 - ㉡ 부적격 판정을 받은자에 대한 조치 계획 등
 - * 교육부에서 안내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표준안을 참고하여 학교별로 문항을 개발하거나 재구성하여 실시 할 수 있다.(※ MBTI, API 등 교직과 상관없는 검사는 활용할 수 없음)
- ③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를 실시 한 후에는 적격판정 명부를 작성하고 별도 편철로 관리해야 한다.
 - ※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는 반드시 교원양성과정 이수 중에 실시되어야 하므로 미참여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 민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(확인서 등) 해야 함. 단, 교직과정 이수자의 경우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과정(「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」 제15조제1항)에 실시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에 대해 교원양성위원회에서 인정 여부 결정

2)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※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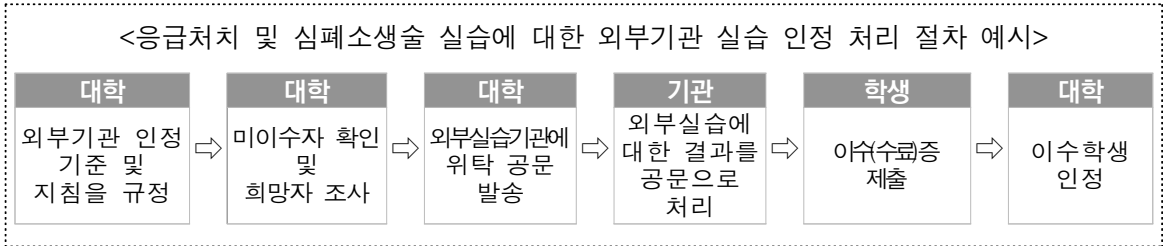
- ① 실습 기준: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.
- ②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관련 규정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내용을 포함하거나 실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, 관련 규정 혹은 계획 수립 시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.
 - ㉠ 대학의 장이 주관하여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대학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위탁 운영 할 경우에는 부실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.
 - ㉡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강좌는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, 예비교원에게 충분한 실습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.
 - ㉢ 학부의 복학생에 대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횟수는 '16년 1학기를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한다

교원자격검정령 부칙 제2조(2015. 12. 15.):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 이상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부터 적용한다. 다만,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하여 이 영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 중 "2회 이상"은 "1회 이상"으로 본다.

※ 2016년 2월 이전에 수료한 경우, 1학기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

- ㉣ 대학의 장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미

이수자를 위한 외부기관의 실습 인정에 대한 조치 계획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대학의 책무성을 제고해야 한다.



※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(기간제교사 포함), 산학겸임교사, 강사, 직원 등이 **소속학교(또는 교육청, 교육청 소속기관)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(「학교보건법 시행규칙」)** 등을 이수할 경우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이수증을 확인하고,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실습으로 인정 할 수 있음. 단, 외부교육실습 인정은 **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**되며, 2018학년도 이후 실시·이수한 교육은 소급인정 가능. **이수증 이외 소속학교(기관)의 내부결재 문서 등(시행 계획, 시행결과, 참석명부 포함)으로 증빙 가능**

※ 장애유형 및 등급에 따라 직접적인 실습이 불가능한 장애학생의 경우, 교원자격검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방법에 관한 간접 실습 등 대체방안을 대학의 장이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.

③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실시 한 후에는 이수(수료)자 명부를 작성하고 별도 편철하여 관리해야 한다.

※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은 반드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실시되어야 하므로 미이수한 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 민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(확인서 등) 해야 함

3) 성인지 교육 ※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

① 교육 이수 기준: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성인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.

㉠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(교직과정, 교육대학원 등)을 이수한 사람: 2회 이상

㉡ 3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(사범대, 일반대 교육과 등)을 이수한 사람: 4회 이상

※ '21학년도 입학자부터 상기 기준을 적용하며, 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에 대한 성인지 교육 기준은 '21년 2월 9일을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한다.

교원자격검정령 부칙 제3조(2021. 2. 9.) :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한다. 이 경우 같은 개정규정 본문 중 “4회 이상”은 “2회 이상”으로 본다.

②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관련 규정에 성인지 교육 내용을 포함하거나 실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, 해당 내용에 반영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㉠ **대학의 장이 주관하여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** 하되, 특강, 연수, 강의개설 등의 방식에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.

㉡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**연 1회 이상** 이수하는 것을 권장하며, **특정학기 또는 특정학년에 집중 운영 되지 않도록** 유의한다. 다만, 학적 변동이나 교육과정 운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횟수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, 이 경우에는 내부 결재 등을 통해 사유를 기록하여 부실 사례가 없도록 한다.

㉢ 대학별 성인지 교육 계획을 마련하고, 교육 계획서에는 교육 내용, 방식, 기간, 이수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
㉣ 성인지 교육 계획서에 교육 내용을 명시하고, 민원 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교육 내용 구성에 유의한다. 다만, ‘성인지 교육의 주요 내용’은 다음 안내를 바탕으로 구성하도록 한다.

